

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16년 2월 17일 (수) 오전 09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58기(2015년 1월 1일 ~ 2015년 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처분(안) 승인의 건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※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4-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강 호 찬 (사내이사)	1971년 10월 30일	현, 넥센타이어(주) 영업부문장 현, (주)넥센 대표이사	이사회	최대주주	최대주주	신규선임

제4-2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김 현 전 (사외이사)	1971년 9월 18일	현, 화양산업(주) 대표이사 전, 삼성테크윈 재직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신규선임

제5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성 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회사와의거래내역	비 고
김 현 전 (사외이사)	1971년 9월 18일	현, 화양산업(주) 대표이사 전, 삼성테크윈 재직	이사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신규선임

제6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16년 2월 02일

NEXGN 넥센타이어주식회사 

대 표 이 사 이 현 봉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

붙임 -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행(변경 전)	개정(변경 후)
제2조 (목적) 29.(신설) 30.(신설) 31.(신설)	제2조 (목적) <u>29.고무제품 렌탈임대업</u> <u>30.수입·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</u> <u>31.방문판매·통신판매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</u>
제22조 (의 장)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22조 (의 장) ① <u>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의장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주총회 의장으로 한다.</u>
제35조 (이사의 직무) ②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직무를 대행한다.	제35조 (이사의 직무) ② <u>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한다.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
부 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	부 칙 (시행일) 이 정관은 <u>2016년 2월 17일</u> 부터시행한다.